

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 개발 [지정공모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대구광역시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수행을 위한 「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 개발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6일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

202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,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◆ 준수규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: www.law.go.kr)
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]
-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]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-226호]
-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]
-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]
-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-161호]
-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[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]
-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-29호]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426호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[법률 제20057호]
-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"지원사업관리지침", "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"

I. 사업공고 개요

1. 사업 목적

- 디지털 신원인증 기반(“다대구”) 시민카드의 지원자격 검증 및 행정서비스 신청 자동화,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행정 강화

2. 사업 내용

- (지원규모) 총 5억원(1개 사업)

구분	방식 및 내용	지원금	사업 수
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·확산	(지정공모)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	5억원	1개

※ 정보시스템감리 적용사업

- (사업기간) 협약일 ~ 2025. 11. 30.

*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5년 5월 1일(7개월)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, 향후 **협약체결일 확정**에 따라 **사업기간 재산정**

- (지원방식) 상호출자방식(매칭펀드) [붙임] 자기부담금 계산양식 참조

※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(단, 전담기관이 주관·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)

-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%를 지급, 중간평가 결과*에 따라 30% 지급 (단, 국비 및 지방비 교부방법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음)

*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

3. 공모 안내

- (공모기간) 2025년 3월 26일 ~ 2025년 4월 15일 14:00까지
 - ※ 접수기한 전 까지 접수를 완료한 신청에 한함
 - ※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안내서 참조
- (지원대상)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·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, 대학,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(주관은 민간기업으로 한정)
 - 컨소시엄 기업은 모두 대구 소재(신청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)
 -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, 미활용시* 지원자격 박탈
 - * 발표평가위원회의 70%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
 - ※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정의상의 '가상자산'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
- (제안내용) 별첨된 안내문 참조 必
- (공동수급)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는 민간기업, 대학, 기관 참여 가능
 -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,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(주관기업 50%이상)
 -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%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
 - ※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(예) 12.3(o), 11.32(x) / 10% 미만 지원 불가
- (기타사항)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(PM)는 최소 30% 이상, 구성원은 최소 10% 이상 참여해야 하며,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

4. 사업 선정 절차

- (선정방식)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름(붙임1 참조)
- (선정제외) 각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

III. 공모무효

-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, 「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
-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
(단,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)
-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

IV. 사업신청서 접수

- (접수기간) 2025년 4월 11일~ 4월 15일, 14:00까지 (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)
- (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) DIP 대표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
- (접수방법) 직접 방문제출
- (관련문의)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
- ABB혁신본부 권준범 책임 (bjk@dip.or.kr, 053-655-5612)

붙임1

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
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·현물)을 하여야 함

※ "총 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"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◆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관련)

1.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"24.4)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총사업비의 75% 이하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50% 이하

- 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
- *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
- * '공기업'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
2.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

-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민간부담금의 13% 이상	민간부담금의 15% 이상

- 사업 중복 여부 확인

-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(최근 3년 이내)

붙임2 사업 참여 배제 대상

○ 사업 참여 배제 대상

<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>

-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와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/공사는 적용하지 않음)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(단,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)
 - ①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-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
확인근거
(증빙서류)

-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*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-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근거로 판단
- ※ 개인: 23년 재무제표
- 법인(12월말 법인인 경우): 23년 12월말 재무제표,
- 법인(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):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(ex: 24년 3월말 재무제표 등)

- 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-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- ※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